

한국만화박물관 관람료 면제대상자

1. 국빈과 그 수행자
2.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자
3. 민원 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 공무수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4.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신분증, 경로우대증 등 제시
5. 3세 이하 영·유아
6.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받는 사람
또는 부천시민으로 19세 이하인 사람
※ 학생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제시
7. 2자녀(막내 18세 이하) 이상의 부천시민
※ 도서관카드, 아이플러스카드, 주민등록등본 제시
8.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린이 10명당 인솔자 1명, 초등학교 이상 단체 20명당 인솔자 1명
9.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이용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18세 미만)
10. 제복을 입은 군인(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에 한함)
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장애인증 소지자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수급자 증명서 소지자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1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 유공자증 소지자
16.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및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 유공자와 배우자 및 특수임무 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 특수임무 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궁 등 이용증 소지자
1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자 증서나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 증서 및 의상자증 소지자
※ 의상자 중 부상 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 보조자
2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21. 「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면제대상자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제시
※ 가족 동반의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
22. 「부천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면제대상자
※ 2년 이내 발급받은 기부자 예우 카드 소지자
2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지자
24.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 명예시민증 소지자
25. 만화박물관 내에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작가와 그 동반자(2인)